

일본의 재정개혁 법제에 대한 최근의 동향

미즈시마 레오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재정법제 Issue Paper 13-18-①

일본의 재정개혁 법제에 대한 최근의 동향

연구자: 미즈시마 레오

2013. 05. 05.



재정법제 Issue Paper 13-18-①

일본의 재정개혁 법제에 대한 최근의 동향

연구자: 미즈시마 레오

2013. 05.



[재정법제연구요약]

○ 검토할 주요 문제

1. 1990년대 이후의 일본 재정적자
2. 고이즈미 정부시대 이후에 시행된 삼위일체 개혁 검토
3. 민주당 정부시대의 사회보장과 세금의 일체개혁
4. 2012년 자민당 정부교체 이후의 전망

- 한국의 18대 대통령선거에서 ‘경제 민주화’, ‘고용 창출’과 함께 ‘복지에 확대’가 논의가 되었으며, 특히 복지확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예산확보가 요청됨.
- 일본 또한 사회복지서비스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1995년 이후 심각한 재정 적자에 직면하였으며 적자규모도 해마다 커지고 있음.
- 이와 같은 문제상황에 대응하여 1995년 무라야마 정부시대에는 ‘재정위기 선언’이 선포되었으며, 재정구조개혁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음. 그 결과 1997년에는 재정구조개혁법이 시행됨.
- 그러나 1998년 오부치 정부시대에는 재정개혁보다도 경기회복을 우선하였기 때문에 재정구조개혁법을 일시 동결함. 고이즈미 정부시대 직전까지 재정 적자는 계속 증가하였음.
- 2001년 이후 고이즈미 정부 시대에는 국고보조부담금, 지방교부세, 그리고 세원이양을 개혁하는 삼의일체의 개혁이 시행되었으나, 각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반대도 개혁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음.

- 2009년에 민주당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으나 자민당 정부시대부터 누적된 재정적자가 이미 심각한 상황이었으며, 게다가 2011년 3월에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 복구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정권교체 이전에 내세웠던 ‘소비세 증세 반대’에 대해서도 재검토하게 되었음.
- 2012년 자민당으로 다시 정권이 교체되고, 현재 아베 정부는 ‘아베노믹스’를 내세우며 재정적자 규모축소노력보다는 경기회복을 더 우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결론적으로 일본은 재정적자에 대한 위기의식은 가지고 있지만 매 정권마다 재정적자 규모축소를 위한 노력보다는 경기회복을 우선시하였기 때문에 문제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

목 차

제 1 장 연구의 배경	1
I. 연구의 목적	1
II. 연구 방법	2
제 2 장 일본에서의 재정관련 법제	3
I. 현 법	3
II. 재정법	5
제 3 장 일본의 재정개혁 관련 법제	13
I. 국가채무위기와 재정구조개혁(1995-2001년)	13
II. 삼위일체개혁과 지방재정(2001-09년)	20
1. 삼위일체개혁	20
2.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화에 관한 법률	22
III. 복지수요 확대와 사회보장법제 개정(2009-12년)	24
IV. 자민당 정부 교체 이후(2012-현재)	33
제 4 장 결 론	37
참 고 문 헌	41
한국어 문헌	41
일본어 문헌	41

제 1 장 연구의 배경

I. 연구의 목적

- 한국의 18대 대통령선거에서 ‘경제 민주화’와 ‘고용 창출’과 함께 ‘복지의 확대’가 큰 이슈가 되었음.¹⁾
- 한국에서는 그 동안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이 진행된 결과, 부의 분배구조 왜곡으로 인한 빈부격차가 심화됨. 경제성장 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정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음.²⁾
- 그러나 복지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며, 그 재원의 조달방법이 문제되고 있음.³⁾
- 특히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형식으로 세금을 조달하고 사용하는 것은 ‘재정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세계 각국에서 복지정책을 위한 재원조달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와 관련된 법제와 정책이 어떠한지 살펴보는 것은 앞으로 한국의 재정관련 입법 또는 정책수립에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됨.

1) “[사설] 경제민주화 후퇴, 솔직히 설명하고 이해 구하라”, 동아일보, 2013년 2월 22일, <http://news.donga.com/3/all/20130221/53210182/1> (검색일: 2013. 3. 5.)

2) 예를 들어, “‘중산층 붕괴 · 양극화 심화로 복지확대는 불가피’ 일치”, 한국일보, 2012년 1월 18일, <http://news.hankooki.com/ArticleView/ArticleView.php?url=society/201201/h2012011802342121950.htm&ver=v002>, (검색일: 2013. 3. 5.)

3) 예를 들어, “[Weekly BIZ][칼럼 Inside] 중세 없는 복지확대 불가능… 세입구조 바꾸자”, Chosun Biz.com, 2013년 2월 22일,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2/22/2013022201186.html (검색일: 2013. 3. 5.)

- 본 연구에서는 세계 각국의 법제도 및 정책 중에서도 일본의 재정 개혁에 관한 법제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자 함. 일본의 재정관련 법제와 그 개혁의 배경, 연혁 그리고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II. 연구 방법

- 한국에서는 앞으로 복지정책을 전개함에 있어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고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됨.
- 본 연구는 네 개의 장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제1장에서 연구목적과 연구방법에 대해서 소개한 뒤, 제2장과 제3장에서는 일본의 재정개혁 관련 법제와 정책에 대해서 소개하기로 함.
- 구체적으로는 제2장에서는 일본에서의 재정에 관한 기본체계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과 재정법에 대해서 각각 살펴보고자 함.
- 제3장에서는 일본에서의 재정개혁에 관한 정책에 대해서 소개하고, 구체적으로는 1990년대 이후에 발생한 재정 위기 이후에 각 정권이 어떤 정책을 전개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함.
- 마지막으로 제4장 결론에서 일본의 재정위기와 그에 대한 정부 대책의 문제점을 논의함으로서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제 2 장 일본에서의 재정관련 법제

I . 헌 법

- 국가의 활동에는 재정적인 기초가 필요하며, 그러한 재정은 국민이 부담하므로 재정을 적절하게 운용하는 것은 국민의 중요한 관심사임.⁴⁾
- 일본에서는 1889년에 제정된 「대일본제국헌법(大日本帝國憲法)」(이하, 메이지 헌법이라고 함)에 따르면 제6장 ‘회계’에서 예산에 대하여 11개의 조문으로 규정되어 있음.
- 메이지 헌법 제62조 제1항에서는 “새롭게 조세를 부과하거나 시율을 변경할 때는 법률로 이를 정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법률주의를 정하고 있음.
- 제64조에서는 예산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음. “국가의 세출 시입은 매년 예산으로 제국의회의 협찬(協贊)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제1항), 메이지 헌법에서는 의회가 예산안에 대하여 부결할 수 없으며 단지 수정만 할 수 있었음.⁵⁾
- 따라서 재정에 대한 의회의 권한에는 한계가 여러 가지 있으며, 제66조에서는 황실의 경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황실경비는 현재의 정액에 의하여 매년 국고로부터 이를 지출하여 장래 증액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해서 제국의회의 협찬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여, 의회의 협찬의 예외규정으로 하였음.

4) 杉本和行「財政と法的規律 -財政規律の確保に関する法的枠組みと財政運営-」財務省財務総合政策研究所「フィナンシャル・レビュー」平成23年第2号(通算第103号)2011年1月、66頁参照。

5) 大山英久「帝国議会の運営と会議録をめぐって」レファランス、通巻652号(2005年)、40頁参照。

- 또한 제70조에서는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의 수요가 있을 경우에 내외의 정형(情形)에 인하여 정부가 제국의회를 초집할 수 없을 경우에는 칙령(勅令)으로 재정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긴급시의 재정처분에 대해서 규정하였음.
- 그리고 제71조에서는 “제국의회에서 예산을 의정(議定)하지 않고 또는 예산 성립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는 전년도의 예산을 시행해야 한다”라고 규정하였음.
- 한편, 현행 일본 헌법에서는 제7장에서 재정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제83조에서는 ‘재정처리권한의 국회의결원칙’, 제84조에서는 ‘조세법률주의’, 제86조에서는 ‘회계연도마다 내각에 의한 예산 작성과 국회의 의결의 필요성’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음.⁶⁾
- 제83조에서는 “국가의 재정을 처리할 권한은 국회의 의결의 의결에 의거하여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메이지 헌법이 제국의회의 ‘협찬’이라고 함에 비하여 현행 헌법에서는 국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고 있음.
- 제84조에서는 “새롭게 조세를 부과하거나 또는 현행 조세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법률 또는 법률이 정하는 조건에 의한 것을 필요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법률주의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음.
- 제86조에서는 “내각은 매회년도의 예산을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받아서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메이지 헌법과 같은 전년도의 예산의 반복에 대해서는 현행 헌법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6) 杉本、前掲、66頁参照。

II. 재정법

- 제88조에서는 황실재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모든 황실재산은 국가에 속한다. 모든 황실의 비용은 예산에 계상(計上)하여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메이지 헌법이 황실의 경비를 제국의회 협찬의 예외로 함에 비하여 현행 헌법에서는 황실의 경비도 국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고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그리고 현행 일본 헌법에서는 메이지 헌법 제70조와 같은 긴급재산처분에 대한 규정은 없음.

<표 1> 메이지 헌법과 현행 일본 헌법의 재정 관련 조문 구조 비교

메이지 헌법	현행 헌법
제62조 조세법률주의	제83조 재정처리의 권한
제63조 영구세주의	제84조 과세의 요건
제64조 예산	제85조 국비지출과 국가의 채무부담
제65조 중의원의 예산선권	제86조 예산의 작성
제66조 황실의 경비	제87조 예비비
제67조 예산삭감	제88조 황실의 재산
제68조 계속비	제89조 공공 재산의 지출이용 제한
제69조 예비비	제90조 결산·회계검사원
제70조 긴급재정처분	제91조 재정상황의 보고
제71조 전년도 예산집행	
제72조 회계검사원	

II. 재정법

- 일본에서는 「재정법」(昭和22年 3月 31日 法律 第34號, 最終改正: 平成14年 12月 13日 法律 第152號)에서 예산의 종류나 작성 그리고 집행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음.

제 2 장 일본에서의 재정관련 법제

- 일본 재정법의 구조를 보면, 다섯 개의 장과 50개 가까운 조문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 ‘재정 총칙’ (제1조 - 제10조), 제2장 ‘회계 구분’ (제11조 - 제13조), 제3장 ‘예산’ (제14조 - 제36조), 제4장 ‘결산’ (제37조 - 제41조), 제5장 ‘잡칙’ (제42조 - 제46조의 4)로 되어 있으며, 한국의 「국가재정법」과 비교하면 간결한 내용으로 정리되어 있음.

<표 2> 한국 국가재정법과 일본 재정법 구성 비교

한국 국가재정법	일본 재정법
제1장 총칙 (제1조 ~ 제15조)	제1장 재정총칙 (제1조 ~ 제10조)
제2장 예산 (제16조 ~ 제55조)	제2장 회계구분 (제11조 ~ 제13조)
제1절 총칙 (제16조 ~ 제27조)	제3장 예산 (제14조 ~ 제36조)
제2절 예산안의 편성 (제28조 ~ 제41조)	제1절 총칙 (제14조 ~ 제15조)
제3절 예산의 집행 (제42조 ~ 제55조)	제2절 예산의 작성 (제16조 ~ 제30조)
제3장 결산 (제56조 ~ 제61조)	제3절 예산의 집행 (제31조 ~ 제36조)
제4장 기금 (제62조 ~ 제85조)	제4장 결산 (제37조 ~ 제41조)
제5장 재정건전화 (제86조 ~ 제92조)	제5장 잡칙 (제42조 ~ 제46조의 4)
제6장 보칙 (제93조 ~ 제101조)	부 칙
제7장 별칙 (제102조)	
부 칙	

- 재정법은 재정관리 작용이나 재정규율의 확보에 대해서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으며, 첫째는 건전재정주의 및 건설공채(建設公債)의 원칙임.⁷⁾

7) 杉本、同上、67頁参照。‘건설공채(建設公債)’란 국가가 공공사업비나 출자금·대부금 등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국채를 말한다.

II. 재정법

- 제1장 ‘재정 총칙’에서는 재정에 관한 용어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제1조에서는 “국가의 예산 기타 재정의 기본에 관해서는 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조)라고 하고 있음.
- 제2장 ‘회계 구분’에서는 첫째는 회계연도의 시기가 종기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제11조), 둘째는 회계연도의 경비 지출(支辨) (제12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13조) 규정하고 있음.
- 한국의 「국가재정법」에서는 “국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2조)라고 하고 있음에 비하여 일본 「재정법」에서는 “매년 4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해 3월 31일에 끝나는 것으로 한다” (일본 재정법 제11조)라고 하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에서는 회계연도의 시기와 종기에 차이가 보임.
- 제3장 ‘회계구분’은 세 개의 절로 나누어져 있으며, 제1절 ‘총칙’ (제14조 - 제15조), 제2절 ‘예산의 작성’ (제16조 - 제30조), 제3절 ‘예산의 집행’ (제31조 - 제36조)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 3> 예산 총칙 구성 한일 비교

한국 국가재정법	일본 재정법
제2장 예산	제3장 예산
제1절 총칙	제1절 총칙
제16조 예산의 원칙	제14조 예산총계주의
제17조 예산총계주의	제14조의 2 계속비
제18조 국가의 세출(歲出)재원	제14조의 3 명시이월비
제19조 예산의 구성	제15조 국고채무부담행위
제20조 예산총칙	

제 2 장 일본에서의 재정관련 법 제

제21조 세입세출예산의 구분	
제22조 예비비	
제23조 계속비	
제24조 명시이월비	
제25조 국고채무부담행위	

- 제3장 제1절 ‘총칙’에서는 예산에 대한 용어의 정의 등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세입 세출은 모두 이를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제14조)라고 규정하고 있음.
- 제2절 ‘예산의 작성’에서는 예산의 정의에 대해서 “예산 총칙, 세입 세출 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이월명허비, 繼越明許費)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제16조)라고 하고 있음.

<표 4> 예산의 작성 구성 한일 비교

한국 국가재정법	일본 재정법
제2절 예산안의 편성	제2절 예산의 적성
제28조 중기사업계획서의 제출	제16조 예산의 내용
제29조 예산안편성지침의 통보	제17조 세입 세출 등의 견적
제30조 예산안편성지침의 국회보고	제18조 세입 세출 등의 개산
제31조 예산요구서의 제출	제19조 독립기관의 세출 견적의 감액
제32조 예산안의 편성	제20조 세입예산명세서, 예정경비 요구서 등의 작성
제33조 예산안의 국회제출	제21조 예산의 작성 · 결정
제34조 예산안의 첨부서류	제22조 예산총칙
제35조 국회제출 중인 예산안의 수정	제23조 예산의 部款項의 구분
제36조 예산안 첨부서류의 생략	제24조 예비비
제37조 총액계상	제25조 계속비의 구분
제38조 예비타당성조사	

II. 재정법

제39조 대규모 개발사업 예산의 단계별 편성 제40조 독립기관의 예산 제41조 감사원의 예산	제26조 국고채무부담행위 제27조 예산의 국회제출 제28조 예산천부서류 제29조 추가경정 예산 제30조 잠정예산
-----------------------------------------------------------	----------------------------------------------------------------------------

- 제3절 ‘예산의 집행’에서는 내각은 예산 성립시 “국회가 의결한 바에 따라 각 성(省) 각 청(廳)의 장에 대하여 그 집행의 책임을 맡는 세입 세출 예산, 계속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를 배부(配賦) 한다” (제31조)라고 규정하고 있음.
- 각 기관의 장은 “세입 세출 및 계속비에 대해서는 각항에서 정하는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할 수는 없다” (제32조)라고 하고 있으며, 목적외 사용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음.
- 각 기관의 장은 “세입 세출 또는 계속비가 정하는 각 부국(部局) 등의 경비의 금액 또는 부국 등 내의 각항의 경비 금액에 대해서는 각 부국 등의 사이 또는 각항 사이에서 이를 이용(移用)할 수 없다” (제33조 제1항)라고 하고 있으나, “단 예산의 집행상의 필요에 따라 미리 예산이 국회의 의결을 경과한 경우에 한해서 재무대신의 승인을 받아 이용할 수 있다” (동항 단서)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예산의 이용을 금지하고 있음.
- 각 기관의 장은 “각 목의 경비의 금액에 대해서는 재무대신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각 목 사이에서 이를 유용할 수 없다” (동조 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예산의 유용을 금지하고 있음.

<표 5> 예산의 집행 구성 한일 비교

한국 국가재정법	일본 재정법
제3절 예산의 집행	제3절 예산의 집행
제42조 예산배정요구서의 제출	제31조 배부
제43조 예산의 배정	제32조 목적외 사용의 금지
제44조 예산집행지침의 통보	제33조 이용·유용의 제한
제45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34조 지불의 계획
제46조 예산의 전용	제34조의 2 공공사업비 등의 지 출부 담행위의 실시계획
제47조 예산의 이용 이체	제35조 예비비의 관리 및 사용
제48조 세출예산의 이원	제36조 예비비 지변의 조서
제49조 예산성과금의 지급 등	
제50조 총사업비의 관리	
제51조 예비비의 관리와 사용	
제52조 예비비사용명세서의 작성 및 국회제출	
제53조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제54조 보조금의 관리	
제55조 예산불확정 시의 예산집행	

- 제4장에서는 결산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각 기관의 장은 “매 회계연도, 재무대신의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상(所掌)에 관한 세입 및 세출의 결산보고서와 국가의 채무에 관한 계산서를 작성하여 이를 재무대신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7조 제1항)라고 규정하고, 또한 재무대신은 전항의 보고서에 의거하여 “세입예산 명세서와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세입결산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하므로 (동조 제2항), “그 소관상의 경비에 관한 사업이 완성된 경우에는 재무대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속비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재무대신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동조 제3항)라고 규정하고 있음.

III.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화에 관한 법률

- 재무대신은 “세입결산 명세서 및 세출결산 보고서에 의거해서 세입·세출의 결산을 작성하여야” 함 (제38조).
- 내각은 “회계검사원의 검사를 받은 세입세출 결산을 차년도 계 회의 상회에서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상례”로 하여 (제39조 제1 항), “세입 세출 결산에는 회계검사원의 검사보고 이외에 세입결 산 명세서, 각 성 각 청의 세출결산 보고서 및 계속비결산 보고 서와 국가의 채무에 관한 계산서를 첨부한다” (동조 제2항)라고 규정됨.

<표 6> 결산 부분의 한일 비교

한국 국가재정법	일본 재정법
제3장 결산	제4장 결산
제56조 결산의 원칙	제37조 결산보고서 등의 작제(作製)·송부
제57조 성인지 결산서의 작성	제38조 세입세출 결산의 작성
제58조 중앙관서결산보고서의 작 성 및 제출	제39조 결산의 회계검사원에의 송부
제59조 국가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제40조 결산의 국회제출
제60조 결산검사	제41조 결산상 잉여의 차년도 세 입 이월
제61조 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제출	

- 일본 재정법은 그 동안 1999년과 2002년의 두 번에 걸쳐서 크게 개정되었으나 1999년 개정은 ‘대장성(大藏省)’으로부터 ‘재무성(財務省)’으로 명칭변경에 따른 용어 변경이며, 2002년 개정은 과 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전자적 기록물의 취급에 관한 규정의 추가이므로, 그 동안 큰 개정은 없었다고 할 수 있음.

I. 국가채무위기와 재정구조개혁 (1995 - 2001년)

제 3 장 일본의 재정개혁 관련 법제

I. 국가채무위기와 재정구조개혁 (1995 - 2001년)

- 1990년대부터 세수(稅收)는 줄어들었으나 세출은 계속 증가하였으며, 1995년에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정부 시대에 다케무라 마사요시(武村正義) 대장대신(大藏大臣: 당시)이 ‘재정위기 선언(財政危機宣言)’을 선포하였음.
- ‘행정개혁’, ‘재정구조개혁’, ‘경제구조개혁’, ‘금융시스템개혁’, ‘사회보장구조개혁’, ‘교육개혁’ 등 총 여섯 가지 개혁을 내세웠음.⁸⁾
- 그 중의 재정구조개혁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구조개혁 5원칙(財政構造改革五原則)’을 내세웠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음.

<표 7> 재정구조개혁 5원칙⁹⁾

- | |
|-----------------------------------------------------------------------------------------------------------|
| 1. 재정구조개혁의 당면의 목표는 2003년으로 한다.
-- 재정건전화목표에 대한 내각의 회의 결정(재정적자 GDP 대비 3%, 적자국채발행 0)은 2005년까지의 가급적 초기로 -- |
| 2. 최근 3년간을 ‘집중개혁기간’으로 한다.
세출의 개혁과 규모의 축소는 ‘모든 성역(聖域)이 없는 것’으로 한다. |
| 3. 당분간 헤이세이 10년도(1998년) 예산에서는 정책적 경비인 일반 세출을 9년도(1997년) 대비 마이너스로 한다. |

8) 「景気動向と財政対策」, 内閣府 経済社会総合研究所, 62頁, http://www.esri.go.jp/jp/prj/sbubble/history/history_02/analysis_02_04_04.pdf (검색일: 2013. 4. 12.)

9) 재정구조개혁 5원칙의 내용에 관해서는 首相官邸, <http://www.kantei.go.jp/jp/kaikaku/pamphlet/p14.html> (검색일: 2013. 4. 12.)

제3장 일본의 재정개혁 관련 정책

4. 모든 장기계획(공공투자기본계획 등)에 대하여 그 대폭 축소를 한다. 세출을 수반하는 새로운 장기계획은 작성하지 않는다.
5. 국민부담율(적자 재정을 포함함)이 50%를 넘지 않도록 재정 운용을 한다.

-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郎) 정부시대인 1996년에는 국가와 지방의 재정 적자를 GDP의 3% 이내로 억제하고, 적자국채 발행율을 0으로 하는 ‘재정건전화 목표에 대하여 (財政健全化目標について)’를 각의에서 의결하였음¹⁰⁾.
- 또한 1997년 9월에는 ‘재정구조개혁의 추진에 대하여’, 11월에는 「재정구조개혁의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財政構造改革の推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平成9年12月5日法律第109号)」 (이하, 재정구조개혁법)가 제정되었음¹¹⁾.
- 그러나 1997년 후반에는 경기가 악화되었으므로 재정건전화 목표시기를 연기할 필요가 생겼으며, 또한 특례공채의 발행단력화 조항을 재정구조개혁법에 추가하게 되었음¹²⁾.
- 재정구조개혁법은 제1장 ‘총칙’ (제1조 - 제6조), 제2장 ‘각 세출 분야의 개혁 기본방침, 집중개혁기간의 주요한 경비의 양적 감축 목표 및 정부가 강구하여야 할 제도개혁 등’ (제7조 - 제38조), 제3장 ‘지방재정의 건전화’ (제39조 - 제41조)로 구성됨.
- 제2장은 총 12개의 절로 구분되어 있으며, 제1절 ‘사회보장’ (제7조 - 제12조), 제2절 ‘공공투자’ (제13조 - 제15조), 제3절 ‘문교’ (제16조 -

10) 鶩見英司「財政構造改革の方向性について」LDI REPORT, 2002. 7, 30頁参照。

11) 鶩見、同上。

12) 鶩見、同上。

I. 국가채무위기와 재정구조개혁 (1995 - 2001년)

제18조), 제4절 ‘방위’ (제19조 - 제20조), 제5절 ‘정부개발원조’ (제21조 - 제22조), 제6절 ‘농림수산’ (제23조 - 제24조), 제7절 ‘과학기술’ (제25조 - 제27조), 제8절 ‘에너지 대책’ (제28조 - 제29조), 제9절 ‘중소기업 대책’ (제30조 - 제31조), 제10절 ‘인건비’ (제32조), 제11절 ‘기타 사항에 관한 경비’ (제33조), 제12절 ‘보조금 등의 재검토’ (제34조 - 제38조)로 구성됨.

<표 8> 재정구조개혁법 구조

일본 재정구조개혁의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장 총칙 (제1조 - 제6조)	
제2장 각 세출분야의 개혁의 기본방침, 집중개혁기간의 주요한 경비의 양적 축소목표 및 정부가 강구하여야 할 제도개혁 등	
제1절 사회 보장 (제7장 - 제12조)	
제2절 공공투자 (제13조 - 제15조)	
제3절 문교 (제16조 - 제18조)	
제4절 방위 (제19조 - 제20조)	
제5절 정부개발원조 (제21조 - 제22조)	
제6절 농림수산 (제23조 - 제24조)	
제7절 과학기술 (제25조 - 제27조)	
제8절 에너지 대책 (제28조 - 제29조)	
제9절 중소기업대책 (제30조 - 제31조)	
제10절 인건비 (제32조)	
제11절 기타 사항에 관한 경비 (제33조)	
제12절 보조금 등의 재검토 (제34조 - 제38조)	
제3장 지방재정의 건전화 (제39조 - 제40조)	
부 칙	

- 「재정구조개혁의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수지가 현저하게 불균형한 상황에 있는 것에 착안하고 재정구조개혁의 추진에 관한 국가의 책무, 재정구조개혁의 당

제3장 일본의 재정개혁 관련 정책

면의 목표 및 국가의 재정운용의 당면의 방침을 정함과 함께 각 세출분야의 개혁의 기본방침, 집중개혁기간(중략)의 국가의 일반회계의 주요한 경비에 관한 양적 축소목표 및 정부가 강구하여야 할 제도개혁과 지방재정의 건전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제1조)라고 하고 있음.

- 제2조에서는 재정구조개혁의 취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재정구조개혁은 인구구조의 고령화 등 우리나라(일본)의 경제 사회정세의 변화, 국제정세의 변화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위기 상황에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장래에 향해서 더욱 효율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확립하여 안심하고 풍족한 복지사회 및 건전하고 활력이 있는 경제를 실현하는 것이 긴요한 과제임을 인식하고 경제구조개혁을 추진하면서 재정수지를 건전화하여 이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재정구조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제2조)라고 규정하고 있음.
- 제정 당시의 재정구조개혁의 목표는 재정적자규모를 GDP 대비 3% 이하로 제한하고자 하였음(제14조).
- 제2장 제1절 사회보장에 대해서는 “정부는 사회보장제도의 구조 개혁을 진전시키고 장래에 걸쳐서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 사회보장제도의 구축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제도의 방법에 대해서 검토하고, 그 결과에 의거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인구구조의 고령화에 수반하는 사회보장관계비의 증가액을 가급적 억제하는 것으로 한다”(제7조 제1항)라고 규정함.
- 세부적으로는 의료보험제도 개혁(제9장), 연금제도 개혁(제10조), 고용보험제도의 재검토(제12조)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음.

I. 국가채무위기와 재정구조개혁(1995 - 2001년)

- 제2절 ‘공공투자’에 대해서는 “정부는 공공사업에 관한 예산에 대하여 경제구조개혁을 조급하게 추진할 필요성, 행정의 각 분야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절한 역할분담 등의 관점을 염두에 두고 중점화 및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한다”(제13조)라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하고 있음.
- 제3절 ‘문교(文敎)’에 대해서는 정부는 문교예산¹³⁾에 대하여 학생수 감소에 따른 합리화, 수익자 부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분담 등의 관점에서 의무교육에 대한 회계부담과 사립학교에 대한 조성에 대해서 재검토함(제16조).
 -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개혁기간의 예산작성시 「사립학교진흥 조성법(私立学校振興助成法)」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 총액이 전년도 예산총액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였음 (제17조).
 - 공립학교에 대해서는 「공립의무교육제학교의 학급편성 및 교직원 정수의 표준에 관한 법률(公立義務教育諸學校の學級編成及び教職員定数の標準に関する法律)」의 규정에 관한 재정 조치에 대해서는 2000년까지 강구하고, 공립의무교육 제학교 교직원의 급여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억제함 (제18조).
- 제4절 ‘방위’에서는 정부는 안전보장의 관점과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방위관계비¹⁴⁾에 대해서도 재정구조개혁을 한다고 규정함 (제19조 제1항).

13) ‘문교예산’이란 학교교육, 사회교육, 학술 및 문화의 진흥 및 보급을 도모하기 위한 행정사무 및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의 예산에 계상(計上)되는 경비를 가리킴.

14) ‘방위관계비’란 자위대의 관리 및 운용과 이에 관한 사무, 조약에 의거한 외국군 대의 주류 및 일본국과 미합중국 사이의 상호방위원조협정에 의거하는 미합중국 정부의 책무의 일본에서의 수행에 수반하는 사무와 안전보장회의의 사무에 관한 것으로서 일반회계예산에 계상되는 경비를 말함 (제19조 제2항).

제3장 일본의 재정개혁 관련 정책

- 구체적으로 보면 개혁기간에 예산을 작성할 때는 방위관계비의 액수를 전년도 예산의 액수를 넘지 않게 규정하였음 (제20조 제1항).
 - 제5절 ‘정부개발원조’¹⁵⁾에 대해서는 정부개발원조가 국제적으로 양적 확충이 충분하다고 인정하면서도 국가의 재정이 위기이므로 양적 확충으로부터 질적 확충으로 전환을 도모한다고 규정한다 (제21조).
 - 정부개발 원조비를 삽감함에 있어서 예산 작성을 함에 있어서 전년도의 예산 액수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22조 제1항, 제2항).
 - 제6절 ‘농림수산’에 대해서는 정부는 농림수산업에 대해서도 시장원리를 도입함으로써 농림수산 관련 예산의 중점화와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제23조), 개혁기간의 예산 작성 시에는 전년도의 예산 액수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24조 제1항).
 - 제7절 ‘과학기술’에 대해서는 「과학기술기본법(科学技術基本法)」에서 규정하는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실시함에 있어서 재정위기를 감안해서 추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제25조).
 - 과학기술진흥비¹⁶⁾를 지급함에 있어서 당해 연구개발을 적절하게 평가하여 중점화와 효율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 (제25조 제2항).
 - 정부는 연구개발기관 등의 통합과 폐지에 관한 계획을 장려하였음 (제27조).

15) ‘정부개발원조’란 개발도상지역 등의 경제 및 사회의 개발 또는 인도지원에 기여하고 국제협력 촉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정부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개발도상지역 등에 대하여 하는 협력이며 (제21조 제2항 제1호), 기술협력, 무상의 자금공여의 협력, 유상의 자금공여의 협력 등을 들고 있음.

16) ‘과학기술진흥비’란 국가의 시험연구기관, 대학, 민간 등에서 이루어지는 연구개발에 관해서 주로 과학기술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일반회계예산에 계상되는 경비를 말한다 (제25조 제3항).

I. 국가채무위기와 재정구조개혁 (1995 - 2001년)

- 제8절 ‘에너지 대책’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에너지 시책을 추진하는 관점에 입각하면서도 에너지수급에 관한 세출을 재검토하고 효율화를 목표로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제28조), 개혁기간의 예산을 작성할 때는 전년도의 예산 액수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29조).
- 제9절 ‘중소기업 대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인의 활력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존중하는 관점에서 중소기업대책비¹⁷⁾의 모든 세출을 재검토한다고 하였으며 (제30조), 개혁기간의 예산 작성 시에는 전년도의 예산 액수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였음 (제31조 제1항).
- 제10절에서는 개혁 기간에는 인건비의 총액을 (제32조), 그리고 제11절에서는 기타 사항에 관한 경비 (제33조)에 대해서도 가급적 억제한다고 규정하였음.
- 제12절에서는 보조금의 재검토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제34조), 구체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삭감 (제35조), 특수법인에 대한 보조금의 삭감 (제36조), 기타에 대한 보조금의 삭감 (제37조) 등을 규정하였음.
- 제3장에서는 지방재정의 건전화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재정구조개혁 추진에 관한 시책에 따라 재정의 자주적 및 자립적인 건전화를 도모한다고 함 (제39조).
- 그러나 1998년에 오부치 게이조(小渕恵三) 정부 시대에는 재정개혁보다도 경기회복을 우선하여, 「재정구조개혁의 추진에 관한

17) ‘중소기업 대책비’란 중소기업의 육성 및 발전과 그 경영의 향상을 도모하는 시책에 관해서 일반회계예산에 계상되는 경비를 말한다 (제30조 제2항).

제 3 장 일본의 재정개혁 관련 정책

특별조치법의 정지에 관한 법률(財政構造改革の推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の停止に関する法律: 平成10年12月18日法律第150号)」를 제정하여, 재정구조개혁의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일시적으로 동결하였음.

- 하시모토 정부의 재정구조개혁이 실패했다는 이유로, 오부치 케이조 정부 시대에는 적극재정으로 정책을 변경하여 불황극복을 위함 대책의 일환으로 소득세 감면, 지역진흥권 발행 등 적극적으로 정부지출을 증가시켜 재정이 급속히 악화되었음¹⁸⁾.
 - 10조엔을 넘는 제2차 추가경정예산을 책정하거나 6조엔을 넘는 감세의 실시, 재정구조개혁법의 정지 등 적극재정노선으로 변경하기를 밝혔음.¹⁹⁾
- 2000년 4월에 오부치 총리의 급병에 따라 총리가 된 모리 요시로(森喜朗) 총리는 오부치 총리의 적극재정노선을 계승하였음.²⁰⁾

II. 삼위일체개혁과 지방재정 (2001-09년)

1. 삼위일체개혁

- 고이즈미(小泉純一郎) 정부 시대에 “경제재정운용과 구조개혁에 관한 기본방침 2003 (経済財政運営と構造改革に関する基本方針 2003)”이 각의결정되었으며, 지방재정의 삼위일체의 개혁의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었음.²¹⁾

18) 鷺見、前掲、30頁参照。

19) 「景気動向と財政対策」、内閣府 経済社会総合研究所、http://www.esri.go.jp/jp/prj/sbubble/history/history_02/analysis_02_04_04.pdf (검색일: 2013. 4. 12.)

20) 「景気動向と財政対策」、内閣府 経済社会総合研究所、http://www.esri.go.jp/jp/prj/sbubble/history/history_02/analysis_02_04_04.pdf (검색일: 2013. 4. 12.)

21) 西森光子「地方財政の三位一体改革の概要と現状」調査と情報、第449号(2004年3月)、

II. 삼위일체개혁과 지방재정 (2001-09년)

- 삼위일체 개혁이란 “국고보조부담금의 폐지·삭감, 세원이양, 그리고 지방교부세의 축소·개혁이라는 상호 밀접히 연관된 3개의 재정개혁안을 동시적·일체적으로 추진한다는 의미에서 물어진 명칭”이라고 함.²²⁾
- 2002년 6월의 ‘경제재정운영과 구조개혁에 관한 기본방침 2002’에서 국고보조부담금, 지방교부세, 세원이양을 포함한 세원 배분 방법을 삼위일체로 검토한다고 한 것이 그 호칭이 계기가 되었음.²³⁾
- 2004년도 예산에서는 1조 300억엔의 보조금이 삭감되었음.²⁴⁾
 - 2004년도 예산에서는 장려적 보조금²⁵⁾을 지방분권을 추진하기 위해서 먼저 삭감하라는 지적을 받아 약 2,639억엔 삭감을 하였음.²⁶⁾
 - 공공사업 관련 보조금을 약 4,527억엔 삭감, 의무교육비 국고 부담금의 퇴직수당과 아동 수당 2,309억엔을 삭감하였음.²⁷⁾
- 2005년 11월에는 국가로부터 지방으로 3조엔의 세원 이양이 결정되었음. 삼위일체개혁의 최종적 결과로 4조엔의 보조금 삭감, 3조엔의 세원이양, 5조엔의 교부세 삭감을 실현하였다고 함.²⁸⁾

1頁参照。

22) 이정만, “일본 지방재정개혁의 성과와 평가”, 한국행정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Vol. 2007, 1면.

23) 西森、前掲、1頁参照。

24) 西森、同上、3頁参照。

25) ‘장려적 보조금’이란 “국가가 지방에 있는 정책을 장려하여, 국가의 정책을 추진할 목적으로 지불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西森、同上).

26) 西森、同上。

27) 西森、同上。

28) 竹中平蔵『構造改革の真実 竹中平蔵大臣日誌』(日本経済新聞出版社、2006年) 294頁参照。

- 그러나 삼위일체의 개혁에 대해 이해관계에 있는 정부부처들의 반대가 있었으며 시행상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함.²⁹⁾
 - 보조금 삭감에 대해서는 권한이 축소되어서 업무가 없어질 것을 우려해서³⁰⁾ 각 성청(省廳)들이 반대하였음.³¹⁾
 - 세원 이양에 대해서는 국세 축소를 이유로³²⁾ 재무성(財務省)이 반대하였음.³³⁾
 - 교부세 개혁에 대해서는 굳이 개혁할 “이유가 없다”라고 주장하여³⁴⁾ 총무성(總務省)이 반대함.³⁵⁾ 또한 지방자치단체도 삭감에 대해서 반대하였음.³⁶⁾
- 정리하면 전반적으로 재정개혁의 필요성 그 자체에는 공감하고 있었으나 개혁의 추진을 담당하는 각 정부부처들이 반대를 하였기 때문에 구조개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음. 이를 이유로 차후 정권에서도 적극적인 개혁시도가 이루어지지 않음.

2.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화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재정을 유지할 경영능력이 요구되어 있으나 심각한 상황에 이를 때까지 재정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문제가 있었음.³⁷⁾

29) 竹中、同上、291頁参照。

30) 岡本全勝「三位一体改革の基本解説」<http://homepage3.nifty.com/zenshow/page210.html>
(검색일: 2013. 5. 9.)

31) 竹中、前掲。

32) 岡本、前掲。

33) 竹中、前掲。

34) 岡本、前掲。

35) 竹中、前掲。

36) 岡本、前掲。

37) 總務省、<http://www.soumu.go.jp/iken/zaisei/kenzenka/index1.html> (검색일: 2013. 3. 13.)

II. 삼위일체개혁과 지방재정 (2001-09년)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명확하게 하여, 재정 재생(再生)이 필요할 때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화에 관한 법률(地方公共団体の財政の健全化に関する法律: 平成19年6月22日法律第94号)」이 2007년에 시행되었음.³⁸⁾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의 건전화에 관한 법률」은 다섯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 ‘총칙’ (제1조 - 제3조), 제2장 ‘재정의 초기건전화’ (제4조 - 제7조), 제3장 ‘재정의 재생’ (제8조 - 제21조), 제4장 ‘공영기업의 경영의 건전화’ (제22조 - 제24조), 제5장 ‘잡칙’ (제25조 - 제29조)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 9>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의 건전화에 관한 법률 구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의 건전화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 - 제3조)
제2장 재정의 초기건전화 (제4조 - 제7조)
제3장 재정의 재생 (제8조 - 제21조)
제4장 공영기업의 경영의 건전화 (제22조 - 제24조)
제5장 잡칙 (제25조 - 제29조)
부 칙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의 건전화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의 건전성에 관한 비율의 공표의 제도를 만들고 당해 비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의 초기건전화 및 재정의 재생과 공영기업의 경영의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한 계획을 책정하는 제도를 정함과 함께 당해 계획의 실시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행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의 건전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라고 하고 있음.

38) 総務省, <http://www.soumu.go.jp/iken/zaisei/kenzenka/index1.html> (검색일: 2013. 3. 13.)

제3장 일본의 재정개혁 관련 정책

- 제2장 ‘재정의 초기건전화’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화 계획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화판단비율의 어느 하나가 초기건전화 기준 이상인 경우(중략)에는 당해 건전화판단비율을 공표한 연도 말일까지 당해 연도를 초년도로 하는 재정의 초기건전화를 위한 계획(중략)을 정하여야 하다”라고 규정함 (제4조 제1항).
- 제3장에서는 재정의 재생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실질적자율, 연결실질적자율(連結實質赤字比率) 및 실질공채비비율의 어느 하나가 재정 재생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재생판단비율을 공표한 연도의 말일까지 당해 연도를 초년도로 하는 재정 재생계획을 정하여야 한다 (제8조).
- 제4장에서는 공영기업의 경영 건전화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공영기업을 경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기업의 자금부족비율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23조 제1항).
- 제5장 잡칙에서는 지방자치법의 감사의 특례 (제26조), 재정의 초기건전화 등이 완료한 단체의 보고 등 (제27조), 도도부현(都道府縣)이 처리하는 사무 (제27조), 정령에의 위임 (제29조)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음.

III. 복지수요 확대와 사회보장법제 개정 (2009-12년)

- 2009년에 이루어진 정권교체에 대비해서 민주당은 정권공약을 발표하였으며, 첫째는 국가의 총 예산 207조엔을 재검토하는 것, 둘째는 중학교 졸업 때까지 1인당 31만 2000엔의 ‘어린이 수당’

III. 복지수요 확대와 사회보장법 제 개정(2009-12년)

실시, 셋째는 연금제도를 일원화하여 월 7만엔의 최저보장연금 실현, 넷째는 지방의 자주재원 증대, 다섯째는 중소기업의 법인 세율을 11%로 줄이는 것을 공약하였다.³⁹⁾

-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정부 시대에는 종전 아소 다로(麻生太郎) 정부시대에 결정된 예산 편성의 개산요구기준(概算要求基準: 실링)을 폐지하였음. 아소 정부시대에는 일반 세출의 상한을 52조 6700억 엔으로 정하였으나 자민당 정부시대인 전년도 예산보다 감소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음.⁴⁰⁾
- 하토야마 총리는 다양한 복지정책의 실현을 내세웠으나 재원은 자민당 정부시대보다도 축소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하토야마 총리 이후에 민주당 정부에서는 소비세 증세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었음.
- 하토야마 정부 시대에는 예전의 특별회계의 잉여금이나 적립금(霞が関埋蔵金)을 이용해서 2010년 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으나⁴¹⁾ 항구적인 재원이 아니므로 그 이후에는 재원부족의 상황에 직면하기 시작하였음.
- 하토야마 정부 시대에 정책 및 민주당의 선거 공약에서는 소비세를 인상하지 않는다고 하였음. 그러나 이전 자민당의 장기정권 시대부터 형성되기 시작한 거대한 재정적자로 인하여 민주당의 선거 공약을 지키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었음.

39) 「民主党の政権政策 Manifesto 2009」, 民主党,
<http://www.dpj.or.jp/article/60025/%E6%B0%91%E4%B8%BB%E5%85%9A%E3%81%AE%E6%94%BF%E6%A8%A9%E6%94%BF%E7%AD%96Manifesto2009> (검색일: 2013. 3. 26.)

40) 「鳩山内閣、概算要求全面見直し、雇用や家計支援へ年内編成」47NEWS,
<http://www.47news.jp/CN/200909/CN2009092901000050.html> (검색일: 2013. 4. 30.)

41) 「2010年度予算は埋蔵金頼みの「苦肉の策」」ロイター通信,
<http://jp.reuters.com/article/topNews/idJPJAPAN-13119320091226> (검색일: 2013. 5. 1.)

제 3 장 일본의 재정개혁 관련 정책

- 하토야미 총리에 이어서 총리가 된 간 나오토(菅直人)는 하토야마 총리 밑에서 재무대신이었을 때 소비세를 인상하여 세수를 확대하고, 세수를 재원으로 하여 개호나 환경 등의 분야에 투자하고, 고용이 창출되어서 소득이 늘어난다고 주장하여 증세가 경제 성장에 이바지한다고 주장하였음.⁴²⁾
- 그러나 간 정부 시대인 2011년 3월에는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였으며, 대지진 재해 복구나 원자력 발전소의 존속 여부에 대하여 여·야당内外에서 비판이 높아져서 총리를 사직하게 되었음.
- 종전의 간 정부 시대에 재무대신을 담당하던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는 간 총리와 마찬가지로 소비세 증세를 주장하였음.
- 노다 정부 시대에는 사회보장의 충실·안정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안정적인 재원확보와 재정 건전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사회보장과 세금의 일체개혁”을 내세웠음.⁴³⁾
- 2012년 2월에 내각에서 결정한 “사회보장·세금 일체개혁 대강”에 따라 “사회보장·세금 일체개혁”에 관한 법률이 15개 제정되었음.⁴⁴⁾
 - 사회보장개혁과 관련된 분야에서는 「사회보장제도개혁추진법 (社会保障制度改革推進法: 平成24年8月22日法律第64号)」이 제정되었으며,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제도의 확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적연금제도, 의료보험제도, 개호보험제도, 소자고령화

42) 辻広雅文「増税による経済成長論」に見る菅財務相の危うさ、民主党政権の宿痾』ダイヤモンドオンライン, <http://diamond.jp/articles/-/7950> (검색일: 2013. 4. 30.)

43) 「社会保障と税の一体改革」内閣官房, <http://www.cas.go.jp/jp/seisaku/syakaihosyou/> (검색일: 2013. 4. 30.)

44) 首相官邸, <http://www.kantei.go.jp/jp/headline/syakaihosyou.html> (검색일: 2013. 4. 30.)

III. 복지수요 확대와 사회보장법제 개정(2009-12년)

대책에 관한 개혁의 기본방침 등을 정하고 이러한 개혁에 대해서 심의할 사회보장제도개혁국민회의(社會保障制度國民會議)를 설치함으로서 개혁을 종합적이고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함.⁴⁵⁾

- 어린이·육아 지원과 관련된 분야에서는 「취학 전의 어린이에 관한 교육·보육 등의 종합적인 제공 추진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就学前の子どもに関する教育、保育等の総合的な提供の推進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平成24年8月22日法律第66号)」, 「어린이·육아 지원법(子ども・子育て支援法: 平成24年8月22日法律第65号)」, 「어린이·육아 지원법 및 취학 전의 어린이에 관한 교육·보육 등의 종합적인 제공의 추진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시행에 수반하는 관계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子ども・子育て支援法及び就学前の子どもに関する教育、保育等の総合的な提供の推進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の施行に伴う関係法律の整備等に関する法律: 平成24年8月22日法律第67号)」이 제·개정되었으며, 영유아 보육·교육시설의 충실화 육아 지원 충실화를 도모하고 있음.⁴⁶⁾
- 의료·개호의 충실과 관련된 분야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国民健康保険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平成24年4月6日法律第28号)」이 개정되었으며,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안전화나 보험료 격차 시정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운영의 도도부현 단위화의 추진등의 소요의 조치를 강구한다”라고 함.⁴⁷⁾

45) 首相官邸, <http://www.kantei.go.jp/jp/headline/syakaihosyou.html> (검색일: 2013. 4. 30.)

46) 首相官邸, <http://www.kantei.go.jp/jp/headline/syakaihosyou.html> (검색일: 2013. 4. 30.)

47) 首相官邸, <http://www.kantei.go.jp/jp/headline/syakaihosyou.html> (검색일: 2013. 4. 30.)

- 연금제도의 개선과 관련된 분야에서는 「국민연금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国民年金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平成24年11月26日法律第99号)」, 「공적연금제도의 재정기반 및 최저보장기능의 간화 등의 위한 국민연금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公的年金制度の財政基盤及び最低保障機能の強化等のための国民年金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平成24年8月22日法律第62号)」, 「피용자연금제도의 일원화 등의 도모하기 위한 후생연금보험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被用者年金制度の一元化等を図るための厚生年金保険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平成24年8月22日法律第63号)」, 「연금생활지원급부급의 지급에 관한 법률(年金生活支援給付金の支給に関する法律: 平成24年11月26日法律第102号)」 등이 개정되었으며, 기초연금의 국고부담금 비율을 줄임으로서 연금제도를 유지하고, 비정규고용자의 사회보장 적용, 공제연금과 후생연금의 일원화, 저소득자나 장애인에 대한 급부 등을 추진함.⁴⁸⁾
-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사회의 실현과 관련된 분야에서는 「현재의 엄한 고용정세에 대응하여 노동자의 생활 및 고용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現下の厳しい雇用情勢に対応して労働者の生活及び雇用の安定を図るための雇用保険法及び特別会計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平成24年3月31日法律第9号)」, 「노동계약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労働契約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平成24年8月10日法律第56号)」, 「고연령자의 고용의 안정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高年齢者等の雇用

48) 首相官邸, <http://www.kantei.go.jp/jp/headline/syakaihosyou.html> (검색일: 2013. 4. 30.)

III. 복지수요 확대와 사회보장법 제 개정(2009-12년)

の安定等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平成24年9月5日法律第78号)』등이 제·개정되었으며, 실업수당 수급기간의 확장, 유기계약노동자의 무기계약 전환 제도화, 그리고 고령 노동자의 계속고용제도의 제한폐지 등이 추진됨.⁴⁹⁾

- 기타 사회복지와 관련된 분야에서는 「지역사회에서의 공생의 실현을 위하여 새로운 장애보험복지시책을 강구하기 위한 관계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地域社会における共生の実現に向けて新たな障害保険福祉施策を講ずるための関係法律の整備に関する法律: 平成24年6月27日法律第51号)」이 개정되었으며, “장애인의 범위에 난치병 등을 추가하여 중대한 방문개호의 대상을 확대함으로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하는 것을 추진함.⁵⁰⁾
- 마지막으로 세제개혁과 관련된 분야에서는 「사회보장의 안정 재원의 확보 등을 도모하는 세제의 근본적인 개혁을 하기 위한 소비세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등의 법률(社会保障の安定財源の確保等を図る税制の根本的な改革を行うための消費税法の一部を改正する等の法律: 平成24年8月22日法律第68号)」「사회보장의 안정재원의 확보 등을 도모하는 세제의 근본적인 개혁을 하기 위한 지방세법 및 지방교부세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社会保障の安定財源の確保等を図る税制の根本的な改革を行うための地方税法及び地方交付税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平成24年8月22日法律第69号)」등이 제정되었으며, 소비세와 지방소비세를 합쳐서 2014년 4월 1일부터 8%, 그리고 2015년 10월 1일부터는 10%까지 올린다고 함.⁵¹⁾

49) 首相官邸, <http://www.kantei.go.jp/jp/headline/syakaihosyou.html> (검색일: 2013. 4. 30.)

50) 首相官邸, <http://www.kantei.go.jp/jp/headline/syakaihosyou.html> (검색일: 2013. 4. 30.)

- 이러한 노다 총리의 증세 정책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견해도 있음.
 - 지진 재해에 대한 복구가 필요하다면 단지 증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국유자산을 매각하거나 당분간 잠정적으로 국채를 먼저 발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음.⁵²⁾
 - 또한 “사회보장과 세금의 일체개혁”에 대해서도 조세에는 원래 “공평·간소·중립”的 원칙이 있으나 현재 일본은 반대하는 상황에 있으며, 단지 증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제자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음.⁵³⁾
- 또한 “사회보장과 세금의 일체개혁”을 실현하고 가령 소비세를 5% 인상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그 중의 1%밖에 사회보장의 강화에 충당될 수 없을 만큼 일본 재정이 심각한 상황에 있다는 지적도 있음.⁵⁴⁾
- 세금만이 올라가고 서비스 내용이 삭감되지 않도록 1) 의료비를 비롯하여 세금 낭비를 삭감하는 것, 2) 나이와 상관없이 능력에 따라서 부담을 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 3) 가급적 저소득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게 세금 이용을 중점화하는 것 등을 제안하는 견해도 있음.⁵⁵⁾

52) 「なぜ野田政権はこれほど増税論議を急ぐのか　あなたが知らない『正直者が馬鹿を見る増税』の内幕　一駒沢大学・飯田泰之准教授インタビュー」, ダイヤモンドオンライン, <http://diamond.jp/articles/-/14650?page=2> (검색일: 2013. 4. 30.)

53) 「なぜ野田政権はこれほど増税論議を急ぐのか　あなたが知らない『正直者が馬鹿を見る増税』の内幕　一駒沢大学・飯田泰之准教授インタビュー」, ダイヤモンドオンライン, <http://diamond.jp/articles/-/14650?page=2> (검색일: 2013. 4. 30.)

54) 藤森克彦 「『社会保障・税の一體改革』を考える」http://www.mizuho-ir.co.jp/publication/report/2011/mhir02_shakaihosh.html 11면 (검색일: 2013. 5. 3.)

55) 飯野奈津子『時論公論　「一體改革　社会保障再建の課題』』, NHK <http://www.nhk.or.jp/kaisetsu-blog/100/125359.html> (검색일: 2013. 5. 3.)

III. 복지수요 확대와 사회보장법 제 개정(2009-12년)

- 민주당은 2012년 정권 종료 이후에 약 3년의 기간 동안, “세금의 투입방향을 바꾼다”, “세금 낭비의 근절”을 목표로 정책이 이루 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음.⁵⁶⁾
- 민주당은 자민당이 2009년에 발표한 ‘정권공약’에 대해서 비판하였으며, 소비세의 인상, 연금제도 개혁, 재정건전화, 유아 무상교육 등의 공약에 대해서는 재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음.⁵⁷⁾
 - 직할사업⁵⁸⁾부담금제도를 재검토하면 약 1조엔의 재원이 필요하고, 유아 무상교육에는 7900억엔, 새로운 급부형 장학금을 창설하면 몇천억엔, 연금 대책 강화에 약 2.6조엔, 경제대책 정책을 유지한다면 매년 약 14조엔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음.⁵⁹⁾
- 그러나 민주당 정권 역시 다양한 복지정책을 선거공약으로 발표하였으나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는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한 점이 많았음.
 - 채산이 좋지 않는 사업을 중지시키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하는 것으로 세금의 낭비를 억제함으로서 새로운 재원을 만들겠다고 주장하였음.
 - 또한 자민당과 달리 소비세 인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음.

56) 「民主党だからできたこと 実現した政策 Vol.3」, 民主党, <http://www.dpj.or.jp/article/101620/> (검색일: 2013. 3. 26.)

57) 「民主党の政権政策 Manifesto 2009」, 民主党, <http://www.dpj.or.jp/article/60025/%E6%B0%91%E4%B8%BB%E5%85%9A%E3%81%AE%E6%94%BF%E6%A8%A9%E6%94%BF%E7%AD%96Manifesto2009> (검색일: 2013. 3. 26.)

58) 직할사업(直轄事業)이란 국가가 결정하여 실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59) 「民主党の政権政策 Manifesto 2009」, 民主党, <http://www.dpj.or.jp/article/60025/%E6%B0%91%E4%B8%BB%E5%85%9A%E3%81%AE%E6%94%BF%E6%A8%A9%E6%94%BF%E7%AD%96Manifesto2009> (검색일: 2013. 3. 26.)

제 3 장 일본의 재정개혁 관련 정책

- 재원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린이 수당’ 창설을 내세웠음.
- 민주당의 공약으로는 새로운 재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었으며, 게다가 정부의 복지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재정이 악화되었음.
- 민주당 정부 시대에는 내각부에 ‘행정쇄신회의(行政刷新會議)’를 설치하여, ‘사업분류(事業仕分け)⁶⁰⁾’에着手하였음.
 - ‘사업 분류’를 통해서 각 사업마다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검토하여 사업의 필요성을 판정함.⁶¹⁾
 - 불요한 사업을 폐지하여 세출을 줄이고 재원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음.⁶²⁾
- 민주당 정부 시대에는 2009년 11월, 2010년 4~5월, 2010년 10~11월의 세 번에 걸쳐서 ‘사업 분류’가 이루어졌음.⁶³⁾
 - 제1차 ‘사업 분류’에서는 국가가 하는 449개 사업을, 제2차에서는 47개의 독립행정법인과 151개의 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제3차에서는 특별회계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과 제1차 및 제2차에서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였음.⁶⁴⁾

60) 한국 연구에서는 ‘시와케작업’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도 있다. (이상훈 외, 「일본 민주당의 정책결정 및 입법과정 연구」, 서울: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11, 57면 참조.)

61) 内閣府 行政刷新, <http://www.cao.go.jp/gyouseisasshin/contents/01/shiwake.html> (검색일: 2013. 4. 12.)

62) 内閣府 行政刷新, <http://www.cao.go.jp/gyouseisasshin/contents/01/shiwake.html> (검색일: 2013. 4. 12.)

63) 内閣府 行政刷新, <http://www.cao.go.jp/gyouseisasshin/contents/01/shiwake.html> (검색일: 2013. 4. 12.)

64) 内閣府 行政刷新, <http://www.cao.go.jp/gyouseisasshin/contents/01/shiwake.html> (검색일: 2013. 4. 12.)

IV. 자민당 정부 교체 이후(2012-현재)

- 2012년에 중의원(衆議院) 의원선거가 이루어졌으며, 정권이 민주당에서 자민당으로 다시 바뀌었음.
-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경제정책의 수립과 재정운영에 대하여 강력한 경제성장을 위한 강력한 경기부양정책과 재정건전화를 양립하는 것이 기본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하여 경제성장과 재정재건의 양립을 목표로 하였음.⁶⁵⁾
- 또한 아베 총리는 2020년도까지 기초적 재정수지를 흑자로 하겠다고 국제적으로 공약하였으며, 앞으로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재정건전화와 경제 재생을 실현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올해 중반에 기본방침을 낸다고 하였음.⁶⁶⁾
- 아베 총리는 ‘아베노믹스(Abenomics)’라고 불리는 경제정책을 내세우고 있으며, 1) 대담한 금융정책, 2) 기동적인 재정정책, 3) 민간투자를 도출하는 성장전략을 기초로 하여 디플레이션과 과도한 엔고(円高)을 시정하겠다고 하였음.⁶⁷⁾
- 그러나 민주당 정부시대에는 국채를 44조엔 이내로 규정하였으나 아베 정부에서는 2012년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약 8조엔의 국채를 발행하기로 하였으며⁶⁸⁾, 재정 적자는 여전히 계속 확대되고 있음.

65) 「経済成長と財政再建を両立=安倍首相」時事通信,

<http://www.jiji.com/jc/zc?k=201304/2013042500230> (검색일: 2013. 5. 2.)

66) 「20年度の基礎的財政収支黒字化、国際的にコミット=安倍首相」ロイター通信,

<http://jp.reuters.com/article/JPpolitics/idJPTYE93O02P20130425> (검색일: 2013. 5. 2.)

67) 「『3本の矢でデフレ脱却と円高是正』と安倍首相が強調 経済3団体の新年祝賀パーティーで」産経新聞, 2013年1月7日, <http://sankei.jp.msn.com/economy/news/130107/fnc13010719000011-n1.htm> (검색일: 2013. 5. 2.)

68) 「国債52兆円、民主『44兆円枠』突破 財政規律との両立が課題」産経新聞, 2013年1

제 3 장 일본의 재정개혁 관련 정책

- 다시 자민당으로 정부가 교체된 현재, 개인소득과세, 자산과세, 법인과세, 소비과세, 국제과세, 납세관련정비, 관세 등의 분야에 대하여 세제개혁안이 전개되어 있음.

<표 10> 2013년도 세제개정 주요내용⁶⁹⁾

I. 개인소득과세
1. 소득세의 최고세율 재검토
2. 금융·증권 세제
3. 주택세제
4. 복구(復興) 지원을 위한 세제상의 조치
5. 조세 특별조치 등
6. 기타
II. 자산과세
1. 상속세·증여세의 재검토
2. 사업승계세제
3. 교육자금의 일활증여에 관한 증여세의 비과세 조치
4. 복구 지원을 위한 세제상의 조치
5. 조세 특별조치 등
6. 기타
III. 법인과세
1. 민간투자의 환기와 고용·소득의 확대
2. 중소기업 대책, 농림수산업 대책
3. 복구지원을 위한 세제상의 조치
4. 기타 조세 특별조치 등

月15日, <http://sankei.jp.msn.com/economy/news/130115/fnc13011520380021-n1.html>

(검색일: 2013. 3. 26.)

69) 財務省, http://www.mof.go.jp/tax_policy/tax_reform/outline/fy2013/250129taikou.pdf (검색일: 2013. 3. 25.)

IV. 자민당 정부 교체 이후(2012-현재)

IV. 소비과세

1. 복구 지원을 위한 세제상의 조치
2. 조세 특별조치 등
3. 기타

V. 국제과세

1. 조세특별조치 등
2. 기타

VI. 납세환경정비

1. 연체세 등의 재검토
2. 기타

VII. 관세

- 아베 정부의 재정정책에 대해서는 아직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OECD 사무총장이 재정재건에 대해서는 대책이 늦다는 점을 비판을 하고 있음.⁷⁰⁾
- 따라서 앞으로 정말로 경제성장과 재정건전화를 양립할 수 있을 것인지 주목됨.

70) 「OECD事務総長、アベノミクス評価 財政再建では苦言」朝日新聞、2013年4月24日、
<http://www.asahi.com/business/update/0424/TKY201304230538.html> (검색일: 2013. 5. 2.)

제 4 장 결 론

- 일본에서는 심각한 적자 국채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이 상황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임. 특히 1990년대의 일본 경제정책은 이른바 케인즈 정책이라고 불리는 재정을 확대하여 수요를 자극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음.⁷¹⁾
- 고이즈미 정부 시대에 경제재정정책담당대신(經濟財政政策担当大臣)이었던 다케나카 헤이조(竹中平蔵)에 따르면 90년대 이후의 일본은 불량채권문제 등 경제의 공급측에 문제가 있으며, 이를 방지한 채로 재정확대를 해도 경제성장을 회복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⁷²⁾
-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일본에서는 재정개혁이 일관성 있게 시행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예를 들어 자민당 정부 시대에는 하시모토 정부 시대에 재정개혁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입법이 시작되었으나 오부치 정부 시대에는 재정구조개혁법을 일시적으로 동결하는 등, 완전히 상반된 정책이 이루어졌으므로 일관성이 없어 보임.
- 재정구조개혁의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정지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르면 “재정구조개혁의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재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대해서는 이 법률이 시행된 이후의 우리나라의 경제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 등을 염두에 두고 강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시가 중단된 지 14년 이상 된 현재도 여전히 재시행되지 않고 있음.

71) 竹中、前掲、251頁参照。

72) 竹中、同上。

- 고이즈미 정부 시대에 삼위일체개혁이 도입되었으나 이해관계에 있는 정부부처들의 반대로 인해 개혁 시행은 매우 어려웠다고 함. 민주당 정부시대에 이어서는 재정이 계속 악화되었으며 결국 해결이 안 되었음.
- 또한 현재 아베 정부에서는 ‘아베노믹스’라고 불리는 경제·금융 정책을 내세우고 있으며, 1) 물가목표를 설정한 대담한 금융완화 정책, 2) 전략적인 경제운용을 가능하게 하는 조직 설립, 3) 향후 2-3년은 경제의 탄력적 운용을 도모하여 큰 규모 대형 추가경정 예산 편성, 4) 방재(防災) 등의 공공투자 증가, 5) 외채 도입 등을 내세웠음.⁷³⁾
- 따라서 현재 아베 정부에서는 앞으로 재정 적자가 커질 가능성 이 있으며 일본에서는 재정 적자의 축소보다도 오히려 적자가 증가하더라도 불황극복 대책을 우선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임.
- 일본에서는 1998년의 오부치 정부시대와 같이 동일한 자민당 정권임에도 불구하고 기존까지 추진되어 오던 재정재건정책에서 적극재정노선으로 전환하였듯이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재정적자가 축소되기 어려운 상황임.
-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단순히 재정 적자를 완화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는 견해에 따르면 오부치 정부 시대의 적극재정노선에 대해서는 금융위기를 극복하였다고 긍정 적으로 평가하는 견해도 있음.⁷⁴⁾

73) 「焦点：デフレ脱却目指す「アベノミクス」に潜む危うさ」ロイター通信,
http://jp.reuters.com/article/topNews/idJPTYE8BF01M20121216?feedType=RSS&feedName=topNews&utm_source=twitterfeed&utm_medium=twitter&utm_campaign=Feed%3A+reuters%2FJPTopNews+%28News+%2F+JP+%2F+Top+News%29 (검색일: 2013. 4. 9.)

74) 「景気動向と財政政策」, 経済社会総合研究所,

제 4 장 결 론

- 한국에서도 최근에는 ‘경제 민주화’, ‘고용의 창출’, ‘복지의 확대’ 등이 정책의 쟁점이 되었으므로 앞으로 재정적극노선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재정위기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참 고 문 헌

참 고 문 헌

한국어 문헌

“[사설] 경제민주화 후퇴, 솔직히 설명하고 이해 구하라”, 동아일보, 2013년 2월 22일, <http://news.donga.com/3/all/20130221/53210182/1> (검색일: 2013. 3. 5.)

이상훈 외, 「일본 민주당의 경책결정 및 입법과정 연구」, 서울: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11.

이정만, “일본 지방재정개혁의 성과와 평가”, 한국행정학회 추계학술 발표논문집, Vol. 2007.

“‘중산층 봉괴 · 양극화 심화로 복지확대는 불가피’ 일치’, 한국일보, 2012년 1월 18일, <http://news.hankooki.com/ArticleView/ArticleView.php?url=society/201201/h2012011802342121950.htm&ver=v002>, (검색일: 2013. 3. 5.)

“[Weekly BIZ][칼럼 Inside] 증세 없는 복지확대 불가능… 세입구조 바꾸자”, Chosun Biz.com, 2013년 2월 22일,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2/22/2013022201186.html (검색일: 2013. 3. 5.)

일본어 문헌

「2010年度予算は埋蔵金頼みの「苦肉の策」」ロイター通信,
<http://jp.reuters.com/article/topNews/idJPJAPAN-13119320091226>
(검색일: 2013. 5. 1.)

「20年度の基礎的財政収支黒字化、国際的にコミット=安倍首相」ロイター通信, <http://jp.reuters.com/article/JPpolitics/idJPTYE93O02P20130425>

참 고 문 헌

(검색일: 2013. 5. 2.)

「「3本の矢でデフレ脱却と円高是正を」と安倍首相が強調 経済3団体の新年祝賀パーティーで」産経新聞, 2013年1月7日,

<http://sankei.jp.msn.com/economy/news/130107/fnc13010719000011-n1.htm>

(검색일: 2013. 5. 2.)

「OECD事務総長、アベノミクス評価 財政再建では苦言」朝日新聞、2013年4月24日, <http://www.asahi.com/business/update/0424/TKY201304230538.html>
(검색일: 2013. 5. 2.)

飯野奈津子「時論公論 「一体改革 社会保障再建の課題」」, NHK

<http://www.nhk.or.jp/kaisetsu-blog/100/125359.html> (검색일: 2013. 5. 3.)

大山英久「帝国議会の運営と会議録をめぐって」レファランス、通巻652号(2005年)。

岡本全勝「三位一体改革の基本解説」<http://homepage3.nifty.com/zenshow/page210.html> (검색일: 2013. 5. 9.)

「景気動向と財政対策」内閣府 経済社会総合研究所、http://www.esri.go.jp/jp/prj/sbubble/history/history_02/analysis_02_04_04.pdf (검색일: 2013. 4. 12.)

「経済成長と財政再建を両立=安倍首相」時事通信, <http://www.jiji.com/jc/zc?k=201304/2013042500230> (검색일: 2013. 5. 2.)

「国債52兆円、民主「44兆円枠」突破 財政規律との両立が課題」産経新聞, 2013年1月15日, <http://sankei.jp.msn.com/economy/news/130115/fnc13011520380021-n1.htm> (검색일: 2013. 3. 26.)

財務省、http://www.mof.go.jp/tax_policy/tax_reform/outline/fy2013/250129taikou.pdf (검색일: 2013. 3. 25.)

「社会保障と税の一体改革」内閣官房, <http://www.cas.go.jp/jp/seisaku/syakaihosyou/>

참 고 문 헌

(검색일: 2013. 4. 30.)

首相官邸、<http://www.kantei.go.jp/jp/kaikaku/pamphlet/p14.html> (검색일: 2013. 4. 12.)

首相官邸、<http://www.kantei.go.jp/jp/headline/syakaihosyou.html> (검색일: 2013. 4. 30.)

「焦点：デフレ脱却目指す「アベノミクス」に潜む危うさ」ロイター通信、
http://jp.reuters.com/article/topNews/idJPTYE8BF01M20121216?feedType=RSS&feedName=topNews&utm_source=twitterfeed&utm_medium=twitter&utm_campaign=Feed%3A+reuters%2FJPTopNews+28News%2FJP%2FTop+News%29 (검색일: 2013. 4. 9.)

杉本和行「財政と法的規律 -財政規律の確保に関する法的枠組みと財政運営-」財務省財務総合政策研究所「フィナンシャル・レビュー」平成23年 第2号 (通巻 第103号) 2011年1月。

総務省、<http://www.soumu.go.jp/iken/zaisei/kenzenka/index1.html> (검색일: 2013. 3. 13.)

辻広雅文「増税による経済成長論」に見る菅財務相の危うさ、民主党政権の宿痾」ダイヤモンドオンライン、<http://diamond.jp/articles/-/7950> (검색일: 2013. 4. 30.)

竹中平蔵『構造改革の真実 竹中平蔵大臣日誌』(日本経済新聞出版社、2006年)。

内閣府 行政刷新、<http://www.cao.go.jp/gyouseisasshin/contents/01/shiwake.html> (검색일: 2013. 4. 12.)

「なぜ野田政権はこれほど増税論議を急ぐのかあなたが知らない「正直者が馬鹿を見る増税」の内幕—駒沢大学・飯田泰之准教授インタビュー」ダイヤモンドオンライン、

참 고 문 헌

<http://diamond.jp/articles/-/14650?page=2> (검색일: 2013. 4. 30.)

西森光子「地方財政の三位一体改革の概要と現状」調査と情報、第449号、
2004年3月。

「鳩山内閣、概算要求全面見直し、雇用や家計支援へ年内編成」47NEWS,

<http://www.47news.jp/CN/200909/CN2009092901000050.html>

(검색일: 2013. 4. 30.)

藤森克彦「社会保障・税の一体改革」を考える」

http://www.mizuho-ir.co.jp/publication/report/2011/mhir02_shakaihosh.html

(검색일: 2013. 5. 3.)

「民主党だからできたこと 実現した政策 Vol.3」民主党、

<http://www.dpj.or.jp/article/101620/> (검색일: 2013. 3. 26.)

「民主党の政権政策 Manifesto 2009」民主党、

<http://www.dpj.or.jp/article/60025/%E6%B0%91%E4%B8%BB%E5%85%9A>

%E3%81%AE%E6%94%BF%E6%A8%A9%E6%94%BF%E7%AD

%96Manifesto2009(검색일: 2013. 3.26.)

鷲見英司「財政構造改革の方向性について」LDI REPORT、 2002年7月。